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59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이원택 · 최민희 · 김승원

이재정 · 이병진 · 윤준병

문대림 · 허성무 · 박희승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된 것으로 본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u>	④ -----제3항에----- ----- ----- ----- -----.